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92
------------	-------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 의 자 : 정점식 · 유경준 · 박덕흠

김용판 · 김형동 · 황보승희

김태호 · 성일종 · 이종성

박형수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실제로 2008년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 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

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p> <p>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 실험 · 조사 ·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